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일하는 밥퍼 사업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 일하는 밥퍼 사업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892
----------	-----

2025. 3. 21.(금)
정책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김현문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 2025년 3월 4일

다. 회부일자 : 2025년 3월 5일

라. 상정일자 : 2025년 3월 13일

- 제42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김현문 의원)

가. 제안사유

- 충청북도 일하는 밥퍼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도민들의 참여를 촉진하여 노인 및 사회참여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과 지역상생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일하는 밥퍼 사업 참여 대상 및 자격 규정(안 제5조)
- 일하는 밥퍼 사업 참여 시간 및 활동 기준 규정(안 제6조)
- 일하는 밥퍼 사업 봉사활동실비 지급 규정(안 제7조)
- 일하는 밥퍼 사업 관련 비용 지원 규정(안 제9조)
- 사무의 위탁 및 협약 규정(안 제10조)

3. 검토보고 요지

가. 제출배경

-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내 노인 및 사회참여 취약계층의 봉사활동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고, 지역 내 농가·소상공인·기업 등에서 필요로 하는 소일거리를 담당하는 인력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일하는 밥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일하는 밥퍼 사업:** 노인 및 사회참여 취약계층이 일정한 장소에서 생산적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며, 자존감을 높이고 지역상생발전을 도모하는 사업

-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을 기점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반면, 충북은 이미 2023년 2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바, 이에 대응한 선제적 노인정책의 발굴이 요구됨.
 - 또한 독거노인과 노인고독사가 증가하고 있어 이분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도 차원의 제도적·정책적 대책 마련이 시급함.
 - 노인인구(충북) : 347,501명(고령화 21.8%→충북 '23.2월, 전국 '24.12월 초고령사회진입) / (독거노인) 110,723명(31%)
 - 고독사(충북) : 167명(전국 3,661명, 60대 이상 50.3%) ← '19년 70명 대비 **239% 증가(전국 124%증가)**
- 특히 노인의 사회참여 필요성 및 당사자의 욕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건강·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해 소외되고 있고,
 - 도 내 인구구조의 고령화 추세로 생산인구는 점차 감소로 하고 있음.
 - 노인 사회참여 제한요인 : 건강문제,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연령주의와 편견, 기술적인 격차
- 이러한 현실에 비춰볼 때,
 - 도 내 농가·소상공인·기업 등(이하 “농가 등”이라 함)에서 일손이 부족해

버려지거나 기계화가 어려운 간단한 소일거리(농산물 다듬기, 간단한 공산품 작업 등)를 봉사활동 개념으로 제공하여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우울증 해소 및 자기만족도와 성취감을 높이고,

- 또한 일손부족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소상공인·기업에도 도움을 줄 수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의 제정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

나. 주요내용 검토

- 본 조례안은 총11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문 체계는 다음과 같음.

	조항	규정내용(조 제목)
총칙규정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실체규정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
	제5조	참여 대상 등
	제6조	참여 시간 등
	제7조	봉사활동실비 지급
	제8조	참여자 활동 관리
	제9조	비용 지원 등
보칙규정	제10조	사무의 위탁 및 협약
	제11조	포상 등
부칙규정	부칙	시행일

- 안 제2조는 조례에 사용된 “일하는 밥퍼 사업”, “노인”, “사회참여 취약계층”, “농가”, “소상공인”, “기업”, “경로당”, “단체작업장”, “기타작업장”, “봉사활동실비”, “자원봉사”의 뜻을 정의하였음.

- 안 제2조제2호에서 “노인”에 대해서는 ‘60세 이상 이상의 사람’으로 규정함.

- 정의규정은 해당 자치법규에 제한되어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으로 규정 시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존중하여 가능한 정의가 같도록 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 현재 국가 복지사업에서 대상노인의 연령을 대부분 65세 이상으로 두고는 있지만, 현행 법령에는 “노인”에 대한 별도의 연령 기준이 없음.
 - 또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본 조례안에 따른 일하는 밥퍼 사업과 유사한 사회활동 지원 대상 노인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조례안에서 “노인”을 60세 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대상 노인의 연령 및 기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은 60세 이상으로 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취업 지원사업 및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2. 법 제11조에 따른 노인 채용기업 창업 지원사업
3. 법 제12조에 따른 공동체사업단 설립·운영 지원사업
4. 법 제13조에 따른 노인친화기업·기관 지원사업
5. 법 제15조에 따른 노인공익활동사업
6. 법 제16조에 따른 노인역량활용사업

- 안 제3조는 일하는 밥퍼 사업의 체계적 운영,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장·군수·관련기관·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참여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 조치 등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였음.
 - 안 제4조는 일하는 밥퍼 사업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실적을 평가해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5조는 일하는 밥퍼 사업의 참여 봉사자와 일감 제공자의 범위 및 참여자 모집, 배치 조정, 안전관리, 교육 등에 대한 도차원의 행정적 지원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타당함.
- 참여 봉사자: 60세 이상 노인 및 사회참여 취약계층

- 일감 제공자: 농가, 소상공인, 기업,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 안 제7조는 일하는 밥퍼 사업체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하는 봉사활동실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제1항에서는 봉사활동실비를 기타작업장(개인적으로 참여)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에게는 개인에게 지급하되, 단체작업장(경로당 단위로 참여)의 경우에는 해당 경로당에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 제2항에서는 봉사활동실비를 현금 외에 지역화폐 또는 유가증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이는 지급되는 봉사활동실비가 해당 시·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로 판단됨.
- 안 제9조는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제1항에서는 봉사활동실비, 수행 전담 인력 고용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홍보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음.
 -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봉사활동실비의 회수 및 부정수급자의 사업 참여 제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음. 이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적 차원 및 발생 시 조치의 근거를 명확히 적시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10조는 일하는 밥퍼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해당 사무의 위탁 및 협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11조는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제1항에서는 일하는 밥퍼 사업에 기여한 참여자, 기관, 법인 또는 단체, 기업 등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명시했고,
 - 제2항에서는 우수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격려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봉사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기여자들의 노고를

인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특히 제2항의 경우, ‘우수 참여자’라는 객관적 기준에 따른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식적인 예산 집행 절차를 따른 지원임을 의미하고 있는 바, 이는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조례에 따른 직무상 행위로서의 제공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됨.
- 다만, 기부행위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상황 및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담당 부서에서는 실제 격려물품 지원에 있어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지원물품의 가액과 종류의 적절성 등 제반 사항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추진해야 할 것임.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내 노인 및 사회참여 취약계층의 봉사활동을 통한 사회활동 참여 확대에 기여하고, 지역 내 농가·소상공인·기업 등에서 필요로 하는 소일거리를 담당하는 인력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일하는 밥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 및 내용 측면에서 타당하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음.
- 또한 도 담당부서의 의견수렴 및 조례안예고 등을 거친 바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없음.

- 다만, 담당부서에서는 봉사활동실비의 부정수급 문제, 또는 기존 저소득층도민들이 가내수공업 형태로 담당하던 일거리 및 장애인 보호작업장 일거리와의 중복으로 인한 민원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있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일하는 밥퍼 사업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 일하는 밥퍼 사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가 추진하는 일하는 밥퍼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여, 노인 및 사회참여 취약계층이 생산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참여 확대와 봉사문화 확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하는 밥퍼 사업”이란 노인 및 사회참여 취약계층이 일정한 장소에서 생산적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며, 자존감을 높이고 지역상생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노인”이란 6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참여 취약계층”이란 지역사회에서 다른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 및 관계망 형성을 통해 친밀한 관계 유지나 생산적 활동을 수행하는데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
4. “농가”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5.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6. “기업”이란 「상법」 제169조 및 제172조에 따른 회사 또는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7.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8. “단체작업장”이란 충청북도 내 경로당에서 공동으로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 뒤 회원의 동의를 받아 신청한 작업장을 말한다.
9. “기타작업장”이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가 지정한 기관, 법인 또는 단체가 설치하여 농가, 기업, 소상공인이 제공하는 일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조성된 작업장을 말한다.

10. “봉사활동실비”란 일하는 밥퍼 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또는 경로당에 교통비, 식비 등의 발생을 고려하여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11. “자원봉사”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일하는 밥퍼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장·군수,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와 협력하여 일하는 밥퍼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참여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시행·평가) ① 도지사는 일하는 밥퍼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하는 밥퍼 사업의 추진 방향 및 목표
2. 참여자 모집 및 배치 기준
3. 참여자 활동 지원 및 실비 지급 기준
4.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방안
5. 안전관리 및 교육 계획
6. 그 밖에 일하는 밥퍼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참여 대상 등) ① 일하는 밥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2조제2호에 따른 노인
2. 도지사가 사회참여 유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회참여 취약계층

② 일하는 밥퍼 사업에 일감을 제공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4호에 따른 농가
2. 제2조제5호에 따른 소상공인
3. 제2조제6호에 따른 기업
4. 그 밖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일감 제공을 인정하는 자

③ 도지사는 참여자의 모집, 배치 조정, 안전관리, 교육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참여 시간 등) 일하는 밥퍼 사업의 활동 참여는 1일 1회로 하며, 단체작업장은 2시간 이상, 기타작업장은 3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7조(봉사활동실비 지급) ① 도지사는 일하는 밥퍼 사업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에게 봉사활동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단체작업장의 경우 해당 경로당에 지급할 수 있다.

② 봉사활동실비는 지역 내 소비 촉진을 고려하여 현금 외에 지역화폐, 유가증권 등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봉사활동실비 지급 대상, 지급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참여자 활동 관리)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하는 밥퍼 사업 참여자의 활동 사항을 점검하고, 출석 및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9조(비용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봉사활동실비
2. 일하는 밥퍼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 인력 고용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3. 일하는 밥퍼 사업 홍보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일하는 밥퍼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

②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참여자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봉사활동실비를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참여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로부터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부정수급자는 일하는 밥퍼 사업 참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10조(사무의 위탁 및 협약) ① 도지사는 일하는 밥퍼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일하는 밥퍼 사업 수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기업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등) ① 도지사는 일하는 밥퍼 사업에 기여한 참여자, 기관, 법인 또는 단체, 기업 등을 대상으로 「충청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우수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격려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상법

제169조(회사의 의의) 이 법에서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제172조(회사의 성립)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운수 및 창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정보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역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9.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

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 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충청북도 일하는 밥퍼 사업을 통해 노인 및 사회참여 취약계층의 고독감 해소 및 삶의 질 향상과 지역상생 발전으로 노인문제, 인력부족문제 해결

2. 비용 발생 요인

- 일하는 밥퍼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인건비, 운영·사업비등 소요경비 지원
- 일하는 밥퍼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에 대하여 실비 지원

3. 관련조문

- 조례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 조례안 제7조(봉사활동실비 지급)
- 조례안 제9조(비용지원)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기타 작업장 : 4,751,792천원]

- 위탁(사회서비스원) 기관 운영비 : 52,489천원 (도비^{100%})

· (인건비) 3,771천원 × 1명 × 11개월 = 41,489천원

· (운영·사업비) 1,000천원 × 11개월 = 11,000천원

- 운영사업단 운영비 : 3,021,358천원 (도비 / 고향사랑기금 포함)

인건비* 31명(1,138,659천원), 수당** 130명(500,500천원), 운영·차량비(1,349,200천원)(도비^{100%} / 고향사랑기금 포함), 사업비(33,000천원)

* 운영사업단 5명, 배송인력 13명, 전담인력 13명, 작업소장 130명 / 작업장 130개소 기준

- 기타 작업장 활동 실비 : 1,677,945천원 (도비^{100%}) / 462명

[시군 경로당 : 2,115,200천원]

- 시군 경로당 운영비 : 수당* 16명(17,600천원), 운영비(97,600천원)(도비^{40%}, 시군비^{60%})
 - * 경로당 수행인력(16명 / 경로당 5개소 당 1명 배치)
- 시군 경로당 활동 실비* : 2,000,000천원(도비^{40%}, 시군비^{60%}) / 1,000명

나. 추계 결과

- ('25년) 14,365,687천원 ('26년 이후) 매년 인건비·물가상승률(3%) 반영
 - * 향후, 참여자수에 따라 운영비, 활동실비 증액 가능

다. 재원조달방안 : 후원금 확보 등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 천원)

구분	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세출	35,320,810	6,866,992	6,962,664	7,061,206	7,162,702	7,267,246
기타 작업장	24,709,197	4,751,792	4,844,008	4,938,990	5,036,820	5,137,587
위탁 기관 운영비	278,672	52,489	54,064	55,686	57,356	59,077
운영사업단 운영비	16,040,800	3,021,358	3,111,999	3,205,359	3,301,519	3,400,565
활동실비	8,389,725	1,677,945	1,677,945	1,677,945	1,677,945	1,677,945
시군 경로당	10,611,613	2,115,200	2,118,656	2,122,216	2,125,882	2,129,659
시군 경로당 운영비	611,613	115,200	118,656	122,216	125,882	129,659
활동실비	10,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재원 조달	35,320,810	6,866,992	6,962,664	7,061,206	7,162,702	7,267,246
도비	28,953,842	5,597,872	5,691,470	5,787,876	5,887,173	5,989,451
시군비	6,366,968	1,269,120	1,271,194	1,273,330	1,275,529	1,277,795